

발신기관명

수신자 수탁기관의 장
(경유)

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[]계약체결, []계약변경, []준공 통보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1. 용역 현황

① 용역종류 및 범위	[] 계획·조사·설계	[] 타당성조사 [] 기본계획 [] 기본설계 [] 실시설계 []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				
	[] 건설사업관리	[] 설계 전 단계 [] 기본설계 단계 [] 실시설계 단계 (□ 의무, □ 임의) [] 구매조달 단계 [] 시공 단계 [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(□ 의무, □ 임의, □ 전체, □ 부분)] [] 시공 후 단계				
	[] 기타	[] 감리 (□ 공동주택, □ 다중이용건축물) [] 시험·평가 [] 품질관리 [] 안전점검·진단 [] 기타()				
용역명			② 공종			
사업위치			③ 사업규모			
발주주체	[] 발주청 [] 발주자, (기관명 또는 상호 :)					
④ 계약자	주 계약자:	(대표자)	지분율	%		
	공동계약자:	(대표자)	지분율	%		
입찰방식	[] 기술·가격분리입찰방식 [] 지명경쟁입찰방식 [] 제한경쟁입찰방식 [] 공개경쟁입찰방식 [] 수의계약 [] 기타()					
선정방식	[] PQ평가방식 [] 기술인평가방식 [] 기술제안서평가방식 [] 종합심사낙찰제방식 [] 기타()					
계약형태	[] 원도급/단독계약	[] 원도급/공동계약	[] 기 타	낙찰률	%	
계약방식	[] 총액계약 [] 장기계속계약 [] 계속비					
대가산출	[] 공사비요율방식 [] 실비정액가산방식 [] 기 타					
⑤ 계약 및 이행내용	구 분	계(백만원)	(회사1)	(회사2)	계약 또는 이행기간	비고
	전 체				. . ~ . .	
	기성분				. . ~ . .	
	금차 계약분				. . ~ . .	
	향후 잔여분				. . ~ . .	

2. 공사개요(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하여 작성)

⑥ 총공사비	백만원(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)	공사기간	. . ~ . .
계약금액	백만원(낙찰률 : %)	시 공 자	(대표자)

3. 계약변경내용

변경구분	변경일자	변경 전	변경 후

끝.

발신기관의 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

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성방법

1. 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·조사·설계, 건설사업관리,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,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.
2. ②란의 공종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(대분류)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.
3. ③란의 사업규모 기재 예시
 - 도로: 확장 및 포장()km, 폭()m - 교량: 길이()m, 폭()m, 교량형식 등
 - 공동주택: ()세대, 연면적()㎡, 층수()층 - 건축물: 연면적()㎡, 층수()층
4. ④란의 계약자(지분을 포함) 및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과 2. 공사개요 항목 작성 시 전기·통신·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.
5.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의 기성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현재까지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, 연차 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며, 금차 계약분은 연차별 계약 중 현재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. 전체는 향후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).
6. ⑥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, 토지 등의 취득·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(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)을 기재합니다.
7. 계약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종류 및 범위,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, 변경사항은 계약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
8. 용역 준공 통보 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전체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.
9. 공사기간, 계약 또는 이행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.
10.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11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합니다.